■ 수도법 시행규칙 [별표 6의2] <신설 2012.5.17>

저수조 위생점검 기준(제22조의3제1항 관련)

건축물의 명칭	
소유자(관리자)	
설치장소	
건축물의 용도	공동주택・사무실・상가・학교・공장・병원・여관・기타
위생점검실시일	

	조사사항	점검기준	적부 (○·
			×)
1	저수조 주위의	청결하며 쓰레기 · 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	
	상태	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, 용수 등이 없을 것	
2	저수조 본체의	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	
	상태	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	
		할 것	
		유출관·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·	
		밀폐되어 있을 것	
3	저수조 윗부	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	
	분의 상태	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	
		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	
		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	
4	저수조 안의	오물, 붉은 녹 등의 침식물, 저수조 내벽 및 내부	
	상태	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	
		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(浮遊物質)이 없을 것	
		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	
		지 아니할 것	
5	맨홀의 상태	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	
		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	
		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	
		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	
6	월류관・통기	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	
	관의 상태	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	
		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	
		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	
7	냄새	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	
8	맛	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아니할 것	
9	색도	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	
10	탁도	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	